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4일, 백종헌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 11.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백종헌의원)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들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포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현행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제조 보고(세척제 등 일부 품목¹⁾에 한함), 제7조제2항에 따른 생산실적 보고

1) 세척제, 행굼보조제, 문신용 염료,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이에 따라 일회용 빨대, 손가락 등 위생용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이 아닌, 소량으로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도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 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2025년 6월부터 법률 제19474호 「위생용품 관리법

2)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서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위생용품 및 그 원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에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일부개정법률」(2023.6.13. 개정) 시행으로,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됨에 따라, 벌크(Bulk) 포장된 칫솔 등을 나누어 재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에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 판매업”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위생용품소분업자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 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것임.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소분업,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비교 >

구 분		위생용품 제 조업	위생용품 소분업 (신설)	위생용품 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
영업 정의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영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 용품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 어 재포장하는 영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 용품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덜 어 별도 포장 없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영업
규 제 내 용	품목제조 보고	○ (세척제, 행굼보조제, 문 신용 염료, 물티슈, 일회 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 라이너에 한함)	X	X
	자가품질 검사	○	X	X
	생산실적 보고	○	X	X
	시설기준	총리령 위임 (원료처리실, 제조·가공 소분실, 포장실 및 창고 구비)	총리령 위임	총리령 위임

□ (위생용품소분업 신설) 현행 식품위생법령³⁾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구분하여 각각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식품제조·가공업에 적용되는 자가품질검사 및 생산실적보고 등 의무사항⁴⁾을 식품소분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제조된 위생용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소분하여 재포장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9. (생략)

4)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2조(실적보고) ① 삭제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영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시설기준과 생산실적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위생용품소분업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해당 영업에 적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필요 최소성 원칙⁵⁾을 충족하는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제5호에서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분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조제2호에서는 소분에 대하여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서도 식품소분업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생용품소분업의 정의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면서 현행법 제2조제2호의 위생용품제조업의 정의에서 ‘소분’을 제외하고 있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을 소분하는 행위는 본래의 제조·가공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 제로웨이스트샵(Zero Waste Shop)은 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포장재·일회용품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을 말하는데, 2016년 국내 최초 제로

5)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규제의 원칙)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웨이스트샵인 ‘더피커(The picker)’를 시작으로 2024년 기준 전국에 약 300여곳이 운영 중임.

- 서울시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고,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공약 일환으로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소분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확대를 추진중에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월부터 2년간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매장 시범운영에 이어 2023년 3월부터 2년간 위생용품인 주방세제 리필판매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⁶⁾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음.

< 리필 판매 시범운영 현장 >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리필 판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위생용품소분업과 같이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 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각각 신설하고 있는데, ‘소분’이 사전적으로 ‘작게 나눔 또는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업종이 소분이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유사한 부분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업종의 대상을 동일하게 위생용품 중 현행법 제10조7)에 따른 기준·규격 중 미생물 기준·규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위생용품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생용품소분업자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현행법령에서 이러닝, 인터넷, 소프트웨어, 콘텐츠, 포인트 등과 같이 영어의 한글 표기가 정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생용

7)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 될 때까지 그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과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총 21종의 위생용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위생용품은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문신용 염료 등 총 4종이며, 세척제, 행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 구강관리용품 등 총 17종의 위생용품은 미생물 기준·규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음.

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과 관련하여, 영어인 ‘refill’을 한글로 음역(音譯)한 ‘리필’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 용어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최종소비자가 직접 나누어 덜어가도록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규정에서 ‘소비자’와 ‘최종소비자’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는바,

위생용품 완제품을 판매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해당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별도의 포장 없이 판매하는 영업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소분업 신설로 영업자의 진입장벽 및 불편을 해소하여 다양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로 변화하는 시장 및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원)

위생용품소분업 신설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의 정의에서 ‘소분’을 제외하고, 위생용품소분업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한 완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 등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또한, 위생용품소분업에 대해서는 실적보고, 자가품질검사 및 품목제조보고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소분’을 삭제함(안 제7조, 제13조 및 제18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위생용품소분업 신설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의 정의에서 ‘소분’을 제외하고, 위생용품소분업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한 완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 등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또한, 위생용품소분업에 대해서는 실적보고, 자가품질검사 및 품목제조보고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소분’을 삭제함(안 제7조, 제13조 및 제18조).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가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떨어져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분·위생처리하는”을 “위생처리하는”으로 한다.

안 제1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분·위생처리되는”을 “위생처리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소분·위생처리”를 각각 “위생처리”로 한다.

안 제23조제1항제1호 중 “회수·폐기한”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폐

기한”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회수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u>가공·소분</u> [(小分): <u>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u>]하는 영업을 말한다. 3.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 ~ 4. (현행과 같음)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분하는	제2조(정의) ----- ----- -----. 1. (개정안과 같음) 2. ----- ----- ----- ----- -----가 <u>공하는</u> ----- -----. 3. 4. (개정안과 같음)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

	<u>영업을 말한다.</u>	<u>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u>
<u><신 설></u>	6. “위생용품소비자 리필 판매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최종소비자가 직접 나누어 덜어가도록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위생용품소비자 리필 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현행과 같음)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 ----- ----- ----- -----

라 제조·가공·소분· 위생처리하는 위생 용품이 제10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에 맞는지를 검사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위 생 처리하는-----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 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 업자에 대하여 해 당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17조 또는 제18 조에 따른 행정처 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삭 제>

		<u>위반한 경우</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품목 등 제조 정지) 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영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 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 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 <u>소분·위 생처리되는</u>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 월 이내의 제조정 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품목 등 제조 정지) (현행과 같 음)	제18조(품목 등 제조 정지) ① ----- ----- ----- ----- ----- ----- ----- ----- ----- ----- ----- ----- ----- ----- ----- ----- <u>위 생 처 리</u> <u>되는</u> ----- ----- ----- ----- ----- ----- -----.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		1. ----- ----- -----

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 으로 제조·가공· <u>소분·위생처리·저</u> 장·진열·운반하거 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 ----- ----- ----- <u>위생처리</u>----- ----- -----
2.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 준에 맞지 아니하 는 위생용품을 판 매·대여하거나 판 매·대여할 목적으 로 제조·가공·<u>소분·</u> <u>위생처리·저장·진</u> 열·운반하거나 영 업에 사용한 경우		2. ----- ----- ----- ----- ----- ----- <u>위생처리</u>-----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 ----- ----- ----- -----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 ----- ----- ----- -----

당하는 경우 그 처 분내용, 해당 영업 소의 명칭 등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 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 하거나 <u>폐기한</u> 경우 2. (생 략) <u><신 설></u>	----- ----- ----- ----- ----- -----. 1. ----- ----- ----- -----회수·폐기 한----- 2. (현행과 같음) <u>② 식품의약품안전</u> <u>처장, 시·도지사</u> <u>또는 시장·군수·</u> <u>구청장은 제16조제</u> <u>3항에 따라 회수계</u> <u>획을 보고받은 경</u> <u>우에는 해당 영업</u> <u>자에 대하여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그 사실</u> <u>의 공표를 명할 수</u> <u>있다.</u> 부 칙	----- ----- ----- ----- ----- -----. 1. ----- ----- ----- -----폐기한----- 2. (개정안과 같음) <u>② (개정안과 같음)</u> 부 칙 <u>제2조(회수계획 공표</u>
<u><신 설></u>		

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던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위생용품소분

제3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업만을 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제조업을 폐업하고 위생용품소분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료를 면제한다.	
--	---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가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영업자”를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분·위생처리하는”을 “위생처리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분·위생처리되는”을 “위생처리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소분·위생처리”를 각각 “위생처리”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계획 보고에 따른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u>가공·소분</u> [(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 ----- ----- ----- <u>가공하는</u>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u><신 설></u>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생략)

②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

가공· <u>소분·위생처리하는</u> 위 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u>위생처리하는</u>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 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 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 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 야 한다.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 쇄) ① ----- ----- ----- ----- ----- ----- ----- -----.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u>
12. (생 략)	<u>령을 위반한 경우</u>
②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 ----- ----- -----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
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
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
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되
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
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
용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
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
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
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
용한 경우

3.·4. (생 략)

② (생 략)

-----위생처리되는-----

1. -----

-----위생처리-----

2. -----

-----위생처리-----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생략) <u><신 설></u>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u>
---	---